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71
----------	-----

2023. 10. 16.
복지도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3. 9. 27. 구청장(교통행정과)

나. 상정의결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0. 16.)

“ 수정가결 ”

2. 제안이유(제안설명 : 안전교통국장 오대중)

대중교통은 일상과 가장 밀접한 이동수단이지만, 어르신 및 청소년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은 반면 소득이 없어 교통비가 고정적인 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교통비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강남구는 상업지구와 업무지구가 밀집되어 있어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승용차 이용량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교통 체증 감소 및 탄소 발생 저감 등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용어 정의 및 근거 마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통복지를 위한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이용방법 및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마. 지원중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4. 관련근거 및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 예산조치 : 교통비 지원에 따른 예산 편성 필요(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진행 중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8. 25. ~ 2023. 9.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 이문성)

1 조례안의 취지

- 조례안은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이하 ‘어르신 등’)에게 분기별 최대 각각 6만원, 4만원, 2만원 이내의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어르신과 청소년, 어린이의 교통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는 한편, 조례상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금지 위반 소지를 해소하고자 하는 취지로 제출되었음.

2 조례안의 주요 사항 검토

가.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안 제5조 및 제8조)

제 정 안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원 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등(교통비 지원 기간 동안 강남구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교통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교통비 지원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어르신 등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의 교통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 조례안은 강남구의 고령층 인구 증가 추세에 따른 어르신에 대한 경제활동 지원 성격을 가진 보편적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경제적 약자에 속한 청소년과 어린이의 이동권을 교육권의 범주로 간주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차원에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신청일 기준 강남구에 주민등록을 둔 어르신 등’에게 차등적으로 교통비를 지급’하려는 것임.
- 위 사업은 어르신 등에게 안전한 이동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버스와 마을버스 이용율을 높여서 교통체증 감소 및 온실가스 저감 등 기후 위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집행부는 기대하고 있음.

- 동 조례안은 어르신 등 지원계획 수립(안 제4조), 지급 대상(안 제5조), 지원체계 구축(안 제6조), 이용방법(안 제7조), 지원중단(안 제9조)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표〉 지원한도

구 분	어르신	청소년	어린이
연간 (산출내역)	240,000원 = 1,200원 × 2회(1일) × 8일(월) × 12개월	160,000원 = 720원 × 2회(1일) × 9일(월) × 12개월	80,000원 = 450원 × 2회(1일) × 7일(월) × 12개월
분기별 지급상한액	60,000원(월2만원)	40,000원(월1.3만원)	20,000원(월0.67만원)

나. 이용방법(안 제7조)

제 정 안
제7조(이용방법) 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 등은 교통비 지원 시스템에 교통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할 수 있는 교통카드는 1인당 1개로 제한한다. ② 어르신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 조례안(안 제7조)은 교통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어르신 등은 교통비 지원 시스템에 교통카드를 등록해야 하여 1인당 1개로 제한되고, 제3자에게 양도 또는 대여할 수 없도록 하였음.
- 다만 어르신 등이 사용한 교통비는 대중교통 전반이 아니고, 서울시 관할 구간을 이용하는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에 한하고 있는 바, 강남구 어르신 등의 주요 대중교통수단이 지하철이 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에서 사업의 한계가 있다고 사료됨.
- ※ 시내·마을버스 이용요금 실비 지원 대상에서 경기·공항·광역·좌석·시외버스 등은 제외되며, 또한 승하차 정류소 기준, 서울시 외(外) 통행 요금 지원도 제외됨.

다.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문제(안 제9조제1항제3호)

제 정 안

제9조(지원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교통비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등록 및 발급한 경우
 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 조건을 충족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 조례안 제9조는 어르신 등이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 요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교통비가 부정하게 지급된 것으로 간주하여 교통비 지원금을 환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집행부가 계획하고 있는 어르신 등 ‘강남구 버스 교통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제도로는 중앙정부의 ‘알뜰교통카드제도¹⁾’가 있고,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제도²⁾’를 24년 1월부터 5월까지 시범 운영하며, 24년 하반기부터 정식으로 운영을 시작할 예정임.
- 조례안이 강남구의 버스 교통비 지원정책과 중앙정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교통비 지원정책의 중복 적용을 조례상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강남구 교통비 지원 정책 사업에 대한 주민의 참여와 관심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됨.

라. 「공직선거법」과의 관계

- 1) 알뜰교통카드는 국민의 교통비 절감을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 중인 사업이며, 대중교통 이용 시에 걷거나 자전거를 타면 그 이동 거리에 따라 정부와 지자체에서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2) 서울시민이 기후동행카드를 이용하여 월 6만5000원을 지불하면 서울시내 지하철·버스·따릉이를 무제한 탈 수 있으며, 기후동행카드는 정기권 형태라고 볼 수 있다.

- 조례안과 관련하여 「공직선거법」 제112조제1항³⁾ 및 제113조제1항⁴⁾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시민을 대상으로 금전 등 재산상 이익의 제공 등의 기부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112조제2항제4호나목⁵⁾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조례에 따른 금품제공행위는 예외적으로 기부행위로 보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조례안에 따른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마. 지원체계 구축(안 제6조)

제 정 안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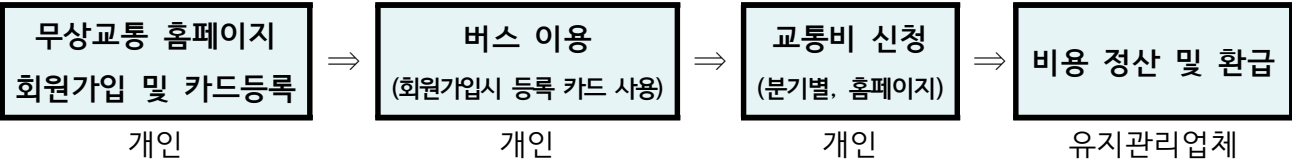
-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 제도는 아래와 같은 지원절차를 거쳐서 진행되는 바, 이를 실행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하도록 안 제6조가 규정하고 있음.

-
- 3)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①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
- 5)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4. 직무상의 행위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표> 지원절차



-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을 위해 24년 회계연도에는 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집행부는 추산하고 있으며, 구축이 완료된 25년 이후부터는 전산시스템 운영비 4억5천만원이 매년 편성·집행될 것으로 보고 있음.

※ 비용추계의 결과

□ 2024년 소요예산 내역 : 1,219,597천원

최초 구축비 4억, 운영비 2억, 버스요금 지원금 6억 2천(2024. 10월~12월) 소요

(단위 : 천원)

구 분		금액	산출내역	비고
합 계		1,219,597		
구축비 및 운영비	전산시스템 구축	400,000	용역 1식	최초 구축시
	서버유지 및 운영비	150,000	"	매년
	교통데이터 정산(환급) 및 콜센터 운영비	50,000	"	"
버스요금 지원금		412,897	60,000원(4분기) × 81,924명 × 8.4%	만 65세 이상
		198,196	40,000원(4분기) × 36,433명 × 13.6%	만13세 ~ 만18세
		8,504	20,000원(4분기) × 35,340명 × 1.2%	만6세 ~ 만12세

※ 지원금 : 지원한도액 × 강남구 연령별 인구수(23.1월 기준) × 서울시 연령별 수단통행분포 버스비율*

* 「2021년 수도권 여객 기·종점통행량(O/D) 전수화 공동조사」 한국교통연구원, 2021.12

※ 경로자, 청소년, 어린이 각각 버스요금이 달라 지원한도액 차등 설정

3 결론

- 대중교통은 주민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실현할 수 있는 물리적 토대에 해당하는 기반시설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회적 약자에 속하는 어르신 등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자 하는 집행부의 취지는 일부 이해될 수 있음.

- 다만 강남구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에서 지하철 체계가 가장 조밀하게 발달된 지역으로서 지하철 이용률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금번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 사업에서 제외되어 있고, 무엇보다 중앙정부나 서울시가 시행중이거나 계획하고 있는 교통비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의 한계가 있다고 사료됨.
- 또한 지급 지원 한도 수준(어르신은 월 2만원, 청소년은 월 1만3천원, 어린이 월 6천7백만원)을 고려하여 지원체계 구축비 및 운영비(초기 투자비 6억원, 매년 4억원) 대비 파급효과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6. 질의 및 답변 요지

□ 제31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2023. 10. 16.)

- 질 의 : 교통카드 양도 및 대여 등을 통해 예산 낭비의 우려가 있음. 안전장치 검토가 필요함. 조례를 보면, 부정한 사용의 경우, 환수, 사용지원중단 조치 등이 규정되어 있는데, 4번이나 반복적 나열이라 조정이 필요하지 않은가
- 답 변 : 이용방법, 중단사유 그다음 사후관리 이런 거를 체계적으로 하겠다고 조문에 밝힌 것임. 지원받는 교통카드 사용자, 구청장, 시스템관리업자에게 금지사항, 지원중단 사유를 각 각 규정한 것임.

7. 토론 요지

- 규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의 사업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점검, 분석, 평가 규정을 신설하자는 수정동의안이 제출됨

8. 심사 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사항 : “없음”

붙임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관련의안번호

제271호

발의일자 : 2023. 10. 16.

제 안 자 : 복지도시위원장

1. 수정이유

- 동어 반복적인 규정을 간략하게 정리하고,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하여 구청장의 사업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점검, 분석, 평가 규정을 신설함

2. 수정내용

- 동어 반복적인 규정에서 반복 내용을 삭제함(안 제7조)
- 구청장의 사업 과정과 결과에 대한 점검, 분석, 평가 규정을 신설함(안 제8조제 4항)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 정 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7조제2항 중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를 “다른”로 한다.

제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할 수 있다.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7조(이용방법) ① (생 략) ② 어르신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 한 교통카드를 <u>다른 사람이 사용 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8조(교통비 지원 등) ----- ----- ① ~ ③ (생략) <u>< 신 설 ></u>	제7조(이용방법) (제정안과 같음) ② 어르신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 한 교통카드를 <u>다른 사람에게 양 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8조(교통비 지원 등) ① ~ ③ (제정안과 같음) ④ <u>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 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할 수 있다.</u>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2. “ 시내버스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비 지원 시스템”이란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교통비 지원 신청·정산 시스템 및 교통비 지급 시스템 등을 말한다.

5. “교통카드”란 선불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등 대중교통 요금 지불 기능을 가진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한도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원 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등(교통비 지원 기간 동안 강남구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방법) 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 등은 교통비 지원 시스템에

교통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할 수 있는 교통카드는 1인당 1개로 제한한다.

② 어르신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교통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은 교통비 지원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어르신 등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의 교통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사업의 효과성과 능률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계획 수립 및 집행 등 과정과 그 결과 등을 점검, 분석, 평가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교통비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등록 및 발급한 경우
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 조건을 충족하였

던 기간에 대하여는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271
----------	-----

제출연월일: 2023. 9. 27.

제출자: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교통행정과

1. 제안이유

대중교통은 일상과 가장 밀접한 이동수단이지만, 어르신 및 청소년의 경우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은 반면 소득이 없어 교통비가 고정적인 지출로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이에 교통비 지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를 실현하고자 함. 또한 강남구는 상업지구와 업무지구가 밀집되어 있어 교통체증이 심한 지역으로, 승용차 이용량을 대중교통으로 흡수하여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이를 통해 교통 체증 감소 및 탄소 발생 저감 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교통비 지원에 관한 용어 정의 및 근거 마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교통복지를 위한 책무 및 지원계획의 수립(안 제3조 및 제4조)

다. 교통비 지원 대상 및 지원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라. 이용방법 및 교통비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및 제8조)

마. 지원중단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안 제9조 및 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서비스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의 보급과 시설·장비의 확충 및 지원의 강화

(2)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65세 이상의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송시설 및 고궁·능원·박물관·공원 등의 공공시설을 무료로 또는 그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이용하게 할 수 있다.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이동권)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나. 예산조치 : 교통비 지원에 따른 예산 편성 필요(비용추계서 첨부)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협의 진행 중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 8. 25. ~ 2023. 9. 15.)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 (2)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서울특별시 강남구 어르신 등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주민의 교통복지 및 이동권 강화를 도모하고,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어르신 등”이란 서울특별시 강남구(이하 “강남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6세 이상 18세 이하인 아동·청소년

2. “ 시내버스 ”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 및 별표 1 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시내버스운송사업 및 마을버스운송사업에 사용되는 것으로 서울특별시 관할 구간을 운행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3. “교통비 지원”이란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교통비 중 일정 요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4. “교통비 지원 시스템”이란 교통비 지원을 위한 전용 웹사이트, 교통비 지원 신청·정산 시스템 및 교통비 지급 시스템 등을 말한다.

5. “교통카드”란 선불교통카드, 후불교통카드 등 대중교통 요금 지불 기능을 가진 카드를 말한다.

제3조(책무)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

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계획 수립 등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을 위해 매년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지원 대상 및 시기
2. 지원 금액, 한도 및 방법
3. 신청 및 지원 절차
4. 그 밖에 시행에 필요한 사항

제5조(지원대상) 구청장은 지원 기준일 현재 강남구에 거주하고 있는 어르신 등(교통비 지원 기간 동안 강남구에 거주하였던 자를 포함한다)에게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체계 구축) ①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을 확충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8제2항에 해당하는 자(이하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라 한다), 「은행법」 제2조에 따른 은행 등과 교통비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 제휴, 협약 또는 위탁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동장에게 필요한 사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이용방법) ① 교통비 지원을 받으려는 어르신 등은 교통비 지원 시스템에

교통카드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할 수 있는 교통카드는 1인당 1개로 제한한다.

② 어르신 등은 제1항에 따라 등록한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이 사용하게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8조(교통비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들은 교통비 지원 정산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어르신 등이 사용한 교통비 사용 내역과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지원 대상의 교통비 사용 내역을 검토한 후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9조(지원중단)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비 지원을 중단하고 부정하게 지급된 교통비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카드를 등록 및 발급한 경우
2. 제5조에서 정한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3. 국가 또는 다른 기관 등에서 버스요금을 지원받는 경우
4. 교통카드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대여한 경우
5. 그 밖에 교통카드의 부정 사용 등의 이유로 그 사용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 연령 및 거주 조건을 충족하였던 기간에 대하여는 교통비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조(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들

에게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교통카드정산사업자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환수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2.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교통비 지원금을 수령한 경우
3. 그 밖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발견된 경우

제11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교통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비 용 추 계 서

I. 비용추계 요약

- 비용발생 요인 : 전산시스템 구축, 버스요금 지원금 등 사업의 추진
- 비용추계의 전제
 - 지원금 : 지원한도액 × 강남구 연령별 인구수 × 서울시 연령별 수단통행분포 버스비율
 - * 지원한도액 : 年 어르신 240,000원, 청소년 160,000원, 어린이 80,000원
 - * 강남구 연령별 인구수(2023.1월 기준) : 어르신 81,924명, 청소년 36,433명, 어린이 35,340명
 - 버스비 지원사업을 통해 유임에서 무임으로 변동 시 버스이용률 상승 예상
-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구분	구비						
	소계(a)						
세출	전산시스템 구축	320,108					320,108
	서버, 콜센터등운영	315,054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115,054
	버스요금 지원금	409,776	2,897,112	3,362,777	3,828,441	4,294,105	14,792,211
	소계(b)	1,044,938	3,347,112	3,812,777	4,278,441	4,744,105	17,227,373
□ 총 비용(a-b)		△1,044,938	△3,347,112	△3,812,777	△4,278,441	△4,744,105	△17,227,373

- 재원조달 방안 : 연도별 사업예산 편성(구비) (단위 : 천원)

연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구분	구비						
	지방세수입	1,044,938	3,347,112	3,812,777	4,278,441	4,744,105	17,227,373
합계		1,044,938	3,347,112	3,812,777	4,278,441	4,744,105	17,227,373

- 덧붙이는 의견 : 향후 시행연차별 버스이용률 및 노인인구 증가세 추이에 따라 비용추계 결과는 변동 가능하며, 이를 고려할 때 사업의 규모 등을 현재 시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 작성자 : 교통행정과 행정7급 정다솜 (☎ 02-3423-6377)

II.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연도		1차연도 (2024년)	2차연도 (2025년)	3차연도 (2026년)	4차연도 (2027년)	5차연도 (2028년)	합계
전산시스템 구축		320,108					320,108
서버, 콜센터 등 운영		315,054	450,000	450,000	450,000	450,000	2,115,054
버스요금 (버스이용률)	65세 이상	275,265(8.4%,2개월)	1,966,176(10%)	2,359,412(12%)	2,752,647(14%)	3,145,882(16%)	10,499,382
	13세~18세	128,828(13.6%,2개월)	874,392(15%)	932,685(16%)	990,978(17%)	1,049,271(18%)	3,976,154
	6세~12세	5,683(1.2%,2개월)	56,544(2%)	70,680(2.5%)	84,816(3%)	98,952(3.5%)	316,675
	합계	1,044,938	3,347,112	3,812,777	4,278,441	4,744,105	17,227,373